1204

준 비 서 면 (항소이유)

사 건 : 2007 나 4288 손해배상(기)등

원 고(항소인) : 이 근목 외 4

피 고(피항소인) : 미쓰비시중공업주식회사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항소인, 이하 원고라고만 함)들의 소송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변론을 준비합니다.

다 음

1. 원심 판결의 요지

원심은, 원고들이 피고(피항소인, 이하 피고라고만 함)에 의해 강제 동원되어 열악한 환경에서 강제 노동에 종사하였고, 피고가 히로시마에 원자 폭탄이 투하된 직후 일본인 노무자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구호 활동을 한 것과는 달리 원고들에 대해서는 피난 장소나 식량 등을 제공하지 않은 채 피폭 현장에 방치하였으며 안전한 귀환에 필요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불법행위 및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한 이사건 소에 관하여, 원심 법원에 재판 관할권이 있으며, 이 사건 전소에 관하여 일본국 재판소가 결론 내린 확정 판결의 효력을 그대로 승인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공익이나 정의 관념 및 국내 법질서 등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는 결과라 전혀 예상 못할 바 아니므로 중복 제소에 해당하여 부적법한 것은 아니라고 하여 피고의 본항전 항변을 모두 배척하였고, 본안에 대한 판단에서도 전전의 구 미쓰비시가 피고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회사의 인적, 물적 구성에

공동인가 법무법인 부 산
전 화 : (051) 951-7000
팩 스 : (051) 951-7001
부산 연제구 거제1동 1490-1 부산법조타운 406호
E-mail:busanlaw@hanafos.com

2007-07-02 21:36 FROM: 051 951 7008 TO:0234765071 P:1/12

기본적인 변화가 없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구 미쓰비시와 피고 사이에 그 법인격의 동일성이 유지되어 왔다고 하여 별개의 법인격을 주장하는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면서, 준거법은 우리나라 현행 민법에 의해 판단하여야 하는데, 원고들의 손해배상채권 및 임금채권은 이 사건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는 물론 일본국과의 국교가 정상화된 1965. 6. 22.부터 기산하더라도 그로부터 10년이 경과되어 제기되었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우리 헌법의 정신에 정면으로 반할 뿐만이 아니라 소멸 시효에 대한 우리 대법원의 판례에 반하고, 일본에서조차 동종의 전후 보상 관련 판례에서 소멸 시효의 원용이 신의칙 및 권리 남용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흐름에 반하는 것이어서 부당합니다.

본건은 <u>일제 침략의 피해 국가에서 강제 동원 기업을 상대로 제기된 최초의 소송</u>으로 본건 판결의 결과에 대해 한국인은 물론 일본인을 비롯한 많은 피해자 및 지원 단체들이 원고들의 승소를 염원하였고, 피해 국가의 사법부에서 정의가 세워짐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살아 있는 동안에 강제 동원 기업들이 독일과 같은 포괄적 해결의 길로 나서는 계기가 되기를 학수고대하였으나 소멸 시효를 이유로 패소하여 원고들을 비롯한 피해자 및 지원 단체들은 아직도 그 충격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한 상황이나 항소심에서 재심리되어 피해자들이 살아 있는 동안에 정의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 원심 판결의 부당성

가. 소멸 시효에 대한 판단 부분

공증인가 법무법인 부 산
전 화 : (051) 951-7000
팩 스 : (051) 951-7001
부산 연제구 거제1동 1490-1 부산법조타운 406호
E-mail:busanlaw@hanafos.com

2007-07-02 21:37 FROM: 051 951 7008 TO:0234765071 P:2/12

원심은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에도 소멸 시효 제도는 적용된다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채권은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할 것인데, 원고들이 주장하는 이 사건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는 물론 피고의 주장과 같이 그 이후 대한민국과 일본국의 국교가 정상화된 1965. 6. 22.로 부터 기산하더라도 그로부터 10년이 경과된 후에 제소하였으므로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은 위 소 제기 이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되었고, 원고 등의 재한 피폭자들은 일본과의 국교가 수립된 직후인 1967년경부터 사단법인 한국원폭피해자원호협회를 설립하고 1974년 그 하부조직으로 한국원폭피해미쓰비시징용자동지회를 설립하여 같은 해 8월 경 그 회원들이 피고를 방문하여 강제 징용으로 인한 배상금 및 미수금의 지급을 촉구하였다는 것인 바, 원고 등은 늦어도 그 무렵에는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그 때부터 기산하더라도 이미 10년의 소멸 시효가 완성되었고, 그 동안 청구권 협정 제2조 및 그 합의 의사록의 규정과 관련하여 우리 정부의 국민에 대한 외교적 보호권만을 포기한 것인지, 혹은 우리 국민의 일본국 또는 일본 국민에 대한 개인적 손해배상 청구권도 포기된 것인지에 관하여 논란이 있어 왔고, 원고들이 위 청구권 협정의 명확한 의미를 알지 못하여 자신들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믿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청구권 협정의 존재 또는 대일 민간 청구권의 소멸을 규정한 일본 국내법의 제정 시행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의 권리 행사를 저지하는 법률상의 장애 사유가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손해배상 채권에 대한 소멸 시효의 기산점을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2005.8.26.이라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소멸 시효 판단의 전제인 청구권 협정의 효

공증인가 법무법인 부 산
전 화 : (051) 951-7000
팩 스 : (051) 951-7001
부산 연제구 거제1동 1490-1 부산법조타운 406호
E-mail:busanlaw@hanafos.com

2007-07-02 21:37 FROM: 051 951 7008 TO:0234765071 P:3/12

력에 대해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않아 재판상 소구할 수 있는 권리인지에 대해 심리조차 하지 않았을 뿐만이 아니라 소구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할 경우 언제부터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는 지 즉 기산점이 언제인지 조차 특정하지 않은 채 결론을 내린 것으로 법적으로 부당하지 그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사 소멸 시효의 대상이 된다 하더라도, 침략 전쟁을 부인하고 일제의 침략 전쟁으로 발생한 법익 침해를 회복하지 아니하고 그 상태를 방조, 조장하는 것도 우리 헌법 정신에 반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위 판단은 우리 헌법 질서 하에서 헌법 규범에 반하는 것으로 용납되기 어렵고 더 나아가 권리 남용인 소멸 시효의 원용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우리 대법원의 판시 취지에도 반하는 것으로 심지어 일본에서 동종 사건에서 판시되고 있는 소멸 시효 등에 대한 판단보다도 후퇴한 것으로 부당합니다.

(1) 원심은 1965년 대한민국와 일본국이 맺은 소위 청구권 협정의 효력과 관련하여 판단을 회피하고 있는 바, 이는 소멸 시효의 전제에 대한 판단이 누락된 것으로 부당합니다.

앞서 제출한 바와 같이 2007. 4. 27. 일본 최고재판소는 이른바 니시마츠 판결에서 국가간의 행위가 전쟁 피해자의 청구권에 대해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 실체적 권리까지를 소멸시키는 것은 아니나 재판상 소구할 권능을 상실케 한다는 판단을 한 적이 있습니다.

위 판결이 나온 후인 2007. 5. 31. 나고야 고등재판소에서도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이 피고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등의 소송에서 위 최고재판소의 판

공동인가 법무법인 부 산
전 화 : (051) 951-7000
팩 스 : (051) 951-7001
부산 연제구 거제1동 1490-1 부산법조타운 406호
E-mail:busanlaw@hanafos.com

위에 기한 청구권은 청구권 협정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한국 정부의 발표에 대한 사법적 판단조차 하지 않은 채 만연히 시효 소멸이 되었다고 부당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2) 가사 원심의 판단과 같이 원고들의 청구권이 청구권 협정 체결 후에도 재판상 소구할 권능이 있어 소멸 시효의 대상이 된다 하더라도 우리 대법원의 판시 취지에 비추어 보면 원심은 부당합니다.

(가) 대법원의 판시 취지

대법원은 2002 .10. 25. 선고 2002다32332호 사건에서, 소멸 시효에 기한 항변권의 행사도 우리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 성실의 원칙과 권리 남용 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판례의 태도는 서울고등법원 2006. 9. 19. 선고 2005나112095호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6. 2. 14. 선고 2005나27906호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6. 1. 26. 선고 2002나32662호 사건, 서울지법 2003. 8. 14. 선고 2002가합32467호 사건 등을 통해 거듭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신의 성실 및 권리 남용 금지라는 민법의 대원칙은 우리 헌법의 규범 조화적 해석을 통해 그 의미가 구체화 되는 바, 우리 헌법 전문은 재판규범성을 가지는 것으로, 우리나라가 삼일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있음과 아울러 항구적인 세계 평화에 이바지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헌법 제5조에 의하면 침략 전쟁은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헌법 정신을 고려하면 침략 전쟁을 긍정하고 임시정부의 법통을 부인하는 것은 헌법 규범에 반하는 위법한 것일 뿐 아니라 선

공증인가 법무법인 부 산
전 화 : (051) 951-7000
팩 스 : (051) 951-7001
부산 연제구 거제1동 1490-1 부산법조타운 406호
E-mail:busanlaw@hanafos.com

2007-07-02 21:38 FROM: 051 951 7008 TO:0234763071

량한 풍속 및 사회질서에도 반하는 위법성을 가지는 것입니다.

또한 일제의 침략 전쟁으로 발생한 법익 침해를 회복하지 아니하고 그 상태를 방조, 조장하는 것도 우리 헌법 및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피고는,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전쟁 전의 회사와 그 법적 동일성이 인정이 되고 있는 바, 일제의 침략 전쟁에 적극 가담하여 저지른 전쟁범죄로 발생한 법익 침해를 회복할 의무가 있고 이러한 의무를 지는 자가 우리 헌법 질서 하에서 소멸 시효에 기한 항변권을 행사하는 것은 우리 헌법 정신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입니다.

(나) 본건의 경우

1) 위법성 및 피해의 중대성

원고들은 일제강점기 조선에서 히로시마로 피고 회사의 직원에 의해 강제 연행되어 열악한 환경에서 강제노동을 강요당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체포, 감금, 강요, 폭행, 상해 등의 범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중대한 위법행위입니다. 피고는 원고들의 기상에서부터 취침에 이르기까지 일체를 지배하였고, 원고를 사역시켜 이익을 얻어가면서도 원고들에게 사역의 내용에 어울리는 의료, 식료, 적당한 숙사 및 침구를 준비하지도 않았고, 일상적으로 폭력을 배경으로 감시 체계를 만들어 기아 상태를 초래하고 이것을 이용하여 원고들의 반항을 억압하였고 일본인 노동자와 비교하여 차별하였던 것입니다.

공증인가 법무법인 부 산
전 화 : (051) 951-7000
팩 스 : (051) 951-7001
부산 연제구 거제1동 1490-1 부산법조타운 406호
E-mail:busanlaw@hanafos.com

07-07-02 21:39 FROM: 051 951 7008 TO:0234765071

히로시마에 원폭이 투하된 후 피고는 그 날 오후에 피해 대책 본부를 설치하고 일본인 종업원의 구제, 복구 대책을 검토하고 각종 구호 원호조치를 취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들과 같은 조선인 징용공에 대해서는 피난 장소와 식량을 제공하지 않고 피재된 상황 그대로 방치하였고 그 동안 수용되어 있었던 기숙사로부터 나가게 하였습니다. 원고들은 자신의 손으로 생명과 신체를 지킬 수 밖에 없었고 무엇인가 살려고 해도 언어도 충분하게 통하지 않아 생존의 위기에 노출되어야 했습니다.

간신히 살아 남아 혼자 힘으로 고향으로 돌아가서도 원고들은 피폭으로 인한 건강 피해에 고통 받아야 했고 같은 처지의 피폭자들이 차차 죽어가는 가운데에서도 사회의 편견에 시달리며 극히 곤궁한 생활을 보내야 했습니다. 피고가 초래한 이러한 행위의 위법성은 극히 높은 것으로 원고들의 피해는 중대하고 이러한 원고들을 우리 헌법이 구제하여야 할 필요성이 극히 높다 할 것입니다.

2) 외적 사정에 의한 권리 행사 불능과 피고에 의한 신뢰의 초래

원고들이 피해를 입은 후 20년이 지난 1965. 6. 22. 그 동안 14년간에 걸친 협의의 결과 드디어 한일조약과 관련 협정이 체결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원고들을 비롯한 전쟁 피해자들은 일본에 의한 진실한 배상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은 일본이 3억 달러불 경제 협력으로 거출하는 형태로 끝이 나 버렸고 원고들은 청구권 협정에 의해 청구권 문제도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이 된 것'으로 여겨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원고들은 1967.7.10. 사단법인 한국원폭피해자원호협회를 설립

공동인가 법무법인 부 산
전 화 : (051) 951-7000
팩 스 : (051) 951-7001
부산 연제구 거제1동 1490-1 부산법조타운 406호
E-mail:busanlaw@hanafos.com

2007-07-02 21:39 FROM: 051 951 7008 TO:0234765071 P:8/12

하고 1974. 8.에는 피고는 위 협회와 교섭에서 드디어 문제해결에 대해 전향적 자세를 보이기에 이르렀습니다. 피고가 전향적 자세를 취하기로 하였다면 원고들과 같은 조선인 징용공의 사역과 피폭의 실태에 대해 조사를 하고, 그 구제에 적극 나서야 하였어야 함에도 실제로는 정치 상황을 이용하여 겉으로는 피해 구제를 가장하면서 어떠한 도움도 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피고의 태도로 인하여 원고들이 법적 수단을 취하는 것을 막았고, 아울러 원고들이 늙어 가는 것을 기다렸다고 평가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국제 정세 및 피고의 표면적 태도로 인하여 원고들의 권리 행사는 불가능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3) 피고의 법인격 동일성을 둘러싼 고도의 기망 행위

원심 판결에서 피고와 전전의 미쓰비시중공업주식회사가 법인격의 동일성이 인정이 된다는 최초의 판결을 한 후에 2007. 5. 31. 나고야고등재판소도 일본 법정에서 최초로 피고 회사가 '구 회사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일체 관여하고 있지 않아 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고, 본건 피해자들에 대한 강제 연행, 강제 노동에 대해서는, 민법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피고는 원고들을 강제 동원하여 강제 노동을 시켰고, 원폭에 노출되게 하여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도 마치 전전의 회사와 피고가 별개의 회사라고 기망을 하여 온 것은 중대한 기망 행위로 이러한 피고에게 소멸 시효의 이익을 부여하는 것은 우리 헌법의 정신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4) 시효 제도의 취지는 권리 행사가 충분히 가능함에도 권리를 장기간에 행사하지 않거나 혹은 권리의 불행사에 대해 권리자에게

공증인가 법무법인 부 산
전 화 : (051) 951-7000
팩 스 : (051) 951-7001
부산 연제구 거제1동 1490-1 부산법조타운 406호
E-mail:busanlaw@hanafos.com

기본적인 책임이 있는 경우에 '권리 위에 잠자는 자'의 권리는 언제까지나 보호할 필요가 없으며, 한편으로는 의무자측의 방어권의 행사가 그 기간의 경과로 인해 방해 받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정의 공평의 이념에서 인정되어 오는 것입니다. 원고들의 본건 소송까지 경위를 보면 도저히 '권리 위에 잠을 잤다'는 평가는 타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형식적으로 소멸 시효를 원용하는 것에 의해 원고들에게는 가혹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법의 정의에도 현저하게 반하는 것입니다. 역으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원고들에게 기대를 가지게 하고서는 배신을 한 피고의 태도는 극히 단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본건과 같은 사안에서 시효를 원용하는 것은 명백히 권리 남용에 해당하고 현저히 신의칙에 반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제 강점기 고향에서 피고의 직원들에 의해 강제 동원되어 언어도 통하지 않는 곳에서 일상적인 감시하에서 도망을 가지 못하게 한 후 강제노동에 시달리게 하였고, 원자 폭탄이라는 예가 없는 폭탄의 피해를 맞은 후에는 인간으로서 경험할 수 없는 지옥을 경험하게 하였고, 아직도 그 원폭의 후유증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이러한 원폭 후유증은 방사능에 기한 것으로 동물 실험에서 그 유전성을 부인할 수 없다는 여러 가지 점을 고려하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각 최소한 금 1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나. 아울러 원고 등이 피고 회사에서 노무자로 강제노동을 하고 한국으로 귀국할 당시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의 합계액에 대해서 적어도 각 100만원이 넘는다는 부분의 주장에 대해 보면,

피고가 실제 원고들에게 임금의 절반은 집으로 송금한다고 약속하였으나 송금하지 않았던 점, 적어도 원고 이근목에 대해서는 공탁서의 금액만

공증인가 법무법인 부 산
전 화 : (051) 951-7000
팩 스 : (051) 951-7001
부산 연제구 거제1동 1490-1 부산법조타운 406호
E-mail:busanlaw@hanafos.com

2007-07-02 21:40 FROM: 051 951 7008 TO:0234765071 P:10/12

으로도 미불금이 49엔 22전이, 원고 정창희의 경우 미불금으로 163엔 14전, 원고 성상화의 경우 미불금으로 155엔 14전, 원고 망 박장환의 경우 미불금으로 92엔 54전이 있고, 원고 이병목, 정상화의 경우에도 비슷하였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점, 1945.6.21.경 이후에는 그 동안 원고에게 지급하였던 분마저도 지급하지 않았다는 점, 1945년 당시와 2005년 당시 가치만 환산하면 금값 비교로 약 14만배에 해당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적어도 원고들에게 지불되어야 금액이 각 100만원을 상회한다는 것은 경험칙 상으로 충분히 입증이 된다 할 것입니다.

3. 최근의 동향에 대해서

지난 2007. 5. 31. 나고야고등재판소는 근로정신대원으로 피고에 의해 강제 연행되어 강제 노동의 피해를 입은 사안에 대해 피고와 일본 국가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였으므로, 유사한 본건 원고들에게 강제 동원 및 강제 노동의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이 되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청구권 협정의 해석에 관해 우리 정부와 달리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기한 청구권도 해당이 된다고 보고 있고, 피고가 청구권 협정을 원용하는 이상 이행을 명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을 따름입니다.

그러나 우리와 달리 한일협정의 관련 문서들을 공개조차 하지 않으면서 무슨 근거로 위와 같이 판단하는 것인지 극히 의문입니다. 따라서 귀원에서 청구권 협정의 해석에 관한 명확한 사법적 판단을 통해 법치주의가 한일양국에 정착이 되고 전쟁 피해자의 인권이 회복되는 정의로운 판결이 선고되어야 할 것입니다.

공증인가 법무법인 부 산
전 화 : (051) 951-7000
팩 스 : (051) 951-7001
부산 연제구 거제1동 1490-1 부산법조타운 406호
E-mail:busanlaw@hanafos.com

2007-07-02 21:40 FROM: 051 951 7008 TO:0234765071 P:11/12

2007. 6.

위 원고들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 원

담당변호사 최 봉 태

법무법인 부 산

담당변호사 정 재 성

부산고등법원 귀중

공증인가
법무법인 부 산
전 화 : (051) 951-7000
팩 스 : (051) 951-7001

부산 연제구 거제1동 1490-1 부산법조타운 406호
E-mail:busanlaw@hanafos.com

2007-07-02 21:41 FROM: 051 951 7008 TO:0234765071 P:12/12

준 비 서 면

사　　건 : 2007나 4288 손해배상(기)

원　고 (항소인) : 이근목외 4

피　고(피항소인) : 미쓰비시중공업주식회사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들의 소송 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준비서면을 제출합니다.

다　음

1. 본 소송은 일제 강점 하 강제 동원 피해자인 원고들이 피해국인 한국 법정에서 가해자인 책임 기업을 상대로 그 법적 책임을 묻는 최초의 소송입니다. 이 소송 과정에서 그 동안 원고들의 권리 실현에 최대의 장애가 되었던 소위 한일청구권협정이 공개되고, 우리 정부의 법적 견해가 발표되었습니다. 아울러 한국 정부가 책임이 있다고 인정한 부분에 대해서 뒤늦게 나마 우리 정부가 피해자를 위한 법률을 제정하여 실시하고 있으나,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서도 소멸되지 않아 일본 정부 및 기업에게 법적 책임이 여전히 남아 있는 원폭 피해문제나 반인도적 불법행위 등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에 의해 해결이 될 수 없고, 되지도 않는 문제이므로 결국 가해자에 의해 법적 책임이 이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하에서는 일제 피해자들의 권리구제를 둘러싼 한국과 일본의 최근 상황에 대해 먼저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공증인가 SAMIL 법무법인 삼 일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33-2 범어빌딩 4층 대표전화. (053) 743-0031 FAX. (053) 753-6963

2. 최근 원고와 같은 일제 피해자들 권리구제 상황

가. 한국 상황

미쓰비시중공업주식회사에 대한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는 현재 피해자들에 대한 권리구제 현황에 대해 간략히 진술하겠습니다.

(1) 법률의 제정과 실시.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피해자지원법 이라 함)이 국회에서 2007.12.10. 법률 제8669호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 후 올해 2008.9.1.부터 피해자들로부터 피해자지원법에 따라 위로금 등의 신청을 받고 있고 극히 최근인 2008.10.30. 국무총리산하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지원 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열어 위로금에 대해 최초로 지급 의결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현재 한국에서는 일제 피해자들에 대한 우리 정부의 지원이 본격화 되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는 "제대로 된 피해보상은 이번이 처음" 이라는 제목으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한일청구권협정을 공개하라는 우리 사법부의 용기있는 판결에 기인한 것입니다.

(2) 피해자지원법의 실시에 따른 법적 분쟁의 발생

하지만 현재 실시중인 위 피해자지원법은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법명이 보상이 아닌 지원으로 피해자들에 대해 법적 권리를 인정한 다음 그 권리를 구제하는 것이 아니어서 근본적인 한계를 가지

고 있고, 이러한 근본적인 한계는 우리 정부가 한일청구권협정을 전면 공개하면서 밝힌 바와 같이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그 법적 책임이 일본측에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한 보상책임을 우리 정부가 부정하고 있는 일방, 우리 정부의 주장대로라면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해 지금도 법적 책임이 있는 일본측에서는 관련 자료를 아직도 공개하지 않은 채 한국 정부의 법적 견해 발표에 대해 동의하는지 아닌지에 대해 명확히 밝히고 있지 않는데 기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상이 아니라 은혜적 차원의 지원이다 보니 지원 대상에 대해서는 국내 강제동원 피해자를 완전히 배제하고 있고, 국외에 강제동원 되었다가 생환하였으나 현재까지 사망한 대부분의 피해자를 위로금 대상에서 역시 배제하고, 현재 생존하고 있는 강제동원 생존피해자 역시 위로금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단지 의료보조비로 월 7만원이 되지 않는 돈을 지급하는 것에 그쳐 피해자들 사이에는 강제동원 되었다가 살아 나온 것이 죄인가 한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울러, 금 2,000만원 위로금의 대상이 되는 해방 전 국외 강제동원 사망자의 경우에도 실제 총각으로 강제동원 되어 희생된 경우가 많은데 그 위로금의 지급대상에 사망자의 조카를 제외하는 등 민법상 상속인의 범위를 극히 제한하여 그나마 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위로금을 받을 사람이 없다는 문제 기사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피해자들에게는 위 돈이 보상이 아니라 위로금이므로 예산상의 이유로 지원 대상을 극히 제한하고 사망자에 대한 위로금의 액도 보상이라면 있을 수 없는 소액이라도 이해해 달라고 하고 있으나 한편으

로는 위로금 등을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지원법 제18조 1항, 동법 시행령 제16조, 별지 제13호 서식에 기해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위 동의서에는 "신청인이 위로금 등을 받았을 때에는 그 사건에 관하여 같은 내용으로 법원에 제소하지 않는 등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시 청구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라는 내용의 서약을 요구하여 실질적으로 보상에 대한 책임을 모면하려는 것이 아닌가 여겨져 위 내용으로 인해 피해자들의 재판청구권을 비롯한 기본권이 침해된다며 원고들에 의해 현재 헌법재판이 제기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아울러 한국 정부는 한일청구권협정문서를 전면 공개를 하면서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일본측에 법적 책임이 남아 있다고 밝혔음에도 이 부분에 대해 일본 정부와 추가 협상을 하지도 않고, 심지어 일본 정부와 한일청구권협정의 해석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여 있음에도 그 분쟁조차 해결하려 하지 않아 이러한 부작위에 대해서 헌법소원이 역시 제기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원고들과 같은 원폭피해자의 경우에는 우리 정부가 한일청구권협정의 적용 대상 외라고 밝혔음에도 문서 공개 후 3년이 넘도록 일본 정부와 이 문제에 대해 협상을 하고 있지 않아 결국 한국원폭피해자협회 회원들 전원이 2008.10.29. 헌법재판소에 공권력 부작위에 기한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헌법재판소에서 사전 심사를 마치고 현재 본안 심리 절차가 진행중 입니다.

(3) 소 결

이와 같이 해방이 된 후 60여년이 넘었고, 한일청구권협정이 맺어진 지 40여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해결이 되고 있지 않은 원고들과 같은

피해자들의 구제 문제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을 맺을 당시 냉전에 편승하여 당시 침략전쟁을 반성하지 않고 원고들과 같은 피해자에 대해 법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던 일본 정부 및 일본 기업의 태도에 근본적인 제 1차 책임이 있고, 1965년 당시 일본 정부와 기업들의 잘못에 대해 책임을 제대로 추궁하였어야 할 우리 정부의 잘못이 경합하여, 현재도 법과 정의의 원칙에 따라 해결되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잘못은 현재 북한과 일본간의 수교과정에서도 일본 정부와 기업이 원고들과 같은 피해자들에 대해 보상을 거부하고 있는데서 알 수 있듯 분단으로 인한 어부지리를 얻으려는 일본측 태도로 인해 현재도 되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일청구권협정의 전면 공개로 원고와 같은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 문제가 한국 사회에서만 비로소 사회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나 이를 계기로 일본 정부 및 일본 기업들의 최종적인 책임 이행을 견인하여 한일간에 법치주의와 민주주의가 정착이 되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나. 일본의 상황

(1) 한일청구권협정 문서공개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고조됨

현재 일본에서도 1965년 냉전의 한가운데에서 과거 일제 침략에 대해 전혀 반성하지 않았고, 일제 피해자들에 대해 제대로 다루지 못했던 잘못이 지금이라도 가해국의 내부에서 스스로 시정되어 그에 따라 법적 정의가 회복되어야 한다는 논의가 일본 사회의 민주화에 따라 활발해져 가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 일제 피해자들에 대해 법적 정의를 회복하여 주는 계기가 되었던 한일청구권협정문서 공개가 일본에서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져 결국 일본에서도 이를 거부하는 일본 외무성을 상대로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동경지방재판소에서는 2007.12.26. 일본 정부의 소극적 태도에 대해 부작위 위법 확인 판결이 있었고, 그 이후 공개된 문서 역시 일제 피해자들의 권리 구제에 대한 책임부분에 대해 내용을 알 수 없게 삭제된 부분이 많아 그 완전 공개를 요구하며 현재 동경지방재판소에서 추가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2) 일본 최고재판소 판결취지에 따른 포괄적 화해 실현 노력

아울러 2007.4.27. 니시마츠건설주식회사에 대한 일본 최고재판소의 판결에서 언급된 바, 즉 국가간의 전쟁배상 포기는 개인의 청구권을 실체적으로 소멸시키는 것이 아니고 단지 재판상 소권을 소멸시킨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들과 같은 피해자들에 대해 책임이 있는 자들의 자발적 책임 이행이 강하게 요구된다고 일본 사법부에서 판단된 바 있으므로 위 일본 최고재판소의 판시취지가 실제 실현되게 하자는 움직임이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현재 일본 동경의 피고 미쓰비시중공업주식회사 본사 앞에서는 매주 금요일이면 미쓰비시중공업주식회사의 한국인 피해자들에 대한 자발적 보상을 촉구하는 일본 시민들의 금요시위가 1년이 넘게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울러 2007.11.1.에는 본건 소송의 원고들을 비롯한 한국인 원폭피해자 원고에 대해 1인당 일본 돈 각 120만엔(변호사 비용 20만엔 포함)씩 일본 정부의 위자료 책임을 인정한 최초의 일본 최고재판소 판결이 나와 나머지 한국의 피해자들이 집단 소송을 현재 추진 중 입니다.

이와 같이 피해자들에 대한 법익 침해를 한일간에 어떻게 포괄적으로 해결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귀 원에서 항소심이 진행중인 현재 한일간에 현안이 되고 있습니다.

(3)소 결

1심 준비서면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원고들과 같은 일제 피해자들에게 법적 정의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우선 한일양국정부가 체결한 한일청구권협정문서를 양국 정부가 전면공개하고 그 공개에 즈음하여 일제 피해자들의 피해 문제가 정부간에 어떻게 처리되었고, 그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지 명백히 한 후에 규명된 책임에 따라 책임이 있는 측에서 그에 걸맞는 책임을 져야 해결이 됩니다. 이것이 법치주의의 기본이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에서는 우리 사법부의 판결에 의해 당시 문서가 전면 공개되어 그 공개에 즈음하여 법적 견해가 밝혀지고 그에 따라 우리 정부의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 조치가 부족하나마 피해자지원법의 형태로 이루어 지고 있는데 반해 정작 법적 책임이 있는 일본 정부에서는 아직도 관련문서조차 완전 공개를 하지 않고 있고, 피고와 같은 기업들은 일본의 최고재판소 판시취지조차 무시하고 있는 위험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3. 바람직한 해결을 위하여

우리 헌법 전문은 재판 규범성을 가지는 것으로 우리 정부가 삼일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있음과 아울러 항구

적인 세계 평화에 이바지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헌법 제5조에 의하면 침략전쟁은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헌법정신을 고려하면 침략전쟁을 긍정하고 침략전쟁으로 인한 법익침해를 방치하는 것은 헌법규범에 반하는 위법한 것일 뿐 아니라 선량한 풍속 및 사회질서에도 반하는 위법성을 가지는 것입니다.

또한 일제의 침략 전쟁에 의해 피해를 입은 원고와 같은 피해자들이 자신들의 권리와 명예를 되찾기 위한 노력을 할 경우에는 이를 배려하고 협조할 의무가 우리 국가기관은 물론 우리 기업 및 국민에게도 있음은 우리 헌법뿐만이 아니라 선량한 풍속 및 사회 질서상으로도 인정된다 할 것입니다.

우리 기업 뿐만 아니라 피고도 한국에 진출하여 영업을 하고 있고, 최근에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아리랑 3호 발사를 용역에 맡기는 과정에서 피고가 경쟁상대방과 비교하여 반값에 입찰하여 낙찰이 되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이 되는 등 적극적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바, 비록 피고는 일본 기업이나 한국에서 영업을 하기 위하여는 우리 헌법 규범을 준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침략 전쟁으로 발생한 법익 침해를 방조 조장하는 것은 우리 헌법에 반하는 것이므로, 우리 법정에서 시효로 인한 항변을 주장하여 그 법적 책임을 부정하려는 것은 용납되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원고들에 대한 본건 청구가 인정됨으로 인해 이것이 자극이 되어 해방 후 60여년, 한일청구권협정 체결 후 40여년이 넘도록 해결되지 않고 있

는, 일제의 침략 전쟁으로 발생한 법익 침해가 회복되지 않는 반헌법적, 반법치주의적 상황이 시정이 되어 한일간에 법치주의 민주주의가 확고해지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2008.11.

위 원고들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 일

담당변호사 최 봉 태

법무법인 부 산

담당변호사 정 재 성

부산고등법원 귀중

그런데 1심 판결이 적법하게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와 일본국 사이에는 민사소송법 제217조에서 정한 상호보증이 있으며, 원고들은 우리나라와 일본의 변호사들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원고들 주장의 불법행위지로서 국제재판관할권이 있음에 아무런 다툼이 없는 히로시마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이므로 민사소송법 제217조에서 정한 상호보증의 다른 요건인 국제재판관할권 및 송달과 응소 요건도 충족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히로시마 지방재판소 및 히로시마 고등재판소는 모두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제척기간 및 소멸시효 기간 완성과 한일 청구권협정에 근거한 재산권조치법의 제정을 이유로 기각하였는바, 이러한 일본 재판소의 판결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보기는 어렵우며, 실제로 1심 판결도 소멸시효 기간 완성을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2008. 4. 3.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선고한 2005가합16473 손해배상 사건의 판결에서도 법원은 2차세계대전 당시의 징용피해자들의 신일본제철 주식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을 제16호증).

그렇다면 결국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및 미지급임금 청구권이 제척기간 내지는 소멸시효 기간이 완성과 한일 청구권 협정에 근거하는 재산권 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하였다는 위 일본재판소의 확정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17조의 승인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이 동일한 소송을 다시 우리나라 법원에 제기하는 것은 위 일본 재판소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1동 1487-1
(정림빌딩 5층 501호) 변호사 유 상 순 법률사무소 전화 : (051)506-7997(代)
FAX : (051)506-7970

어 허용되지 않으므로(대법원 1989. 3. 14. 선고 88므184, 88므191 판결 참조), 결국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기각되어야 할 것입니다.

2. 1심에서의 주장의 유지

피고는 이하 설명드릴 바와 같이, 국제적 중복제소 주장 및 공탁에 대한 주장을 제외한 1심에서의 주장을 항소심에서도 전부 유지하고자 합니다.

가. 국제재판관할의 부존재

1심 판결도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섭외적 사건에 관하여 국내의 재판관할을 인정할지 여부는 국제재판관할에 관하여 조약이나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상의 원칙이 아직 확립되어 있지도 않고, 이에 관해 우리나라의 성문법규도 없는 이상(현행 국제사법상의 국제재판관할에 대한 조항인 제2조는 그 시행일인 2001. 7. 1.이전의 사안에 대해서는 적용이 없습니다), 결국 당사자간의 공평, 재판의 적정, 신속을 기한다는 기본이념에 따라 조리에 의하여 이를 결정함이 상당할 것입니다(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다41897 판결 및 대법원 1995. 11. 21. 선고 93다39607 판결 참조).

그런데 위 대법원 판결에서 언급된 기준인 (1) 소송당사자들의 공평, 편의 그리고 예측가능성과 같은 개인적 이익, (2) 재판의 적정, 신속, 효율 및 판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1동 1487-1 (정림빌딩 5층 501호) 변호사 유 상 순 법률사무소 전화 : (051)506-7997(代) FAX : (051)506-7970

결의 실효성과 같은 법원 및 국가의 이익, (3) 법정지와 당사자 및 분쟁이 된 사안과의 실질적 관련성의 측면에서 살펴볼 때 이 사건은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없어서 대한민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인정될 수 없고, 오히려 이 사건에 실질적인 관련이 있는 일본국의 재판소가 국제재판관할을 가진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첫번째, 당사자의 공평, 편의 및 예측가능성의 측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고들은 모두 일본국에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과 동일한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여 1심 및 2심에서 모두 패소판결을 받았고, 상고기각 판결은 이미 확정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국 법인인 피고에게 피고의 지점이나 영업소가 개설되어 있지 않은 외국인 대한민국에서 다시 동일한 재판을 받으라는 것은 당사자의 공평이나, 편의 및 예측가능성의 측면에서 심히 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두번째, 재판의 적정, 신속, 효율 및 판결의 실효성의 측면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미 일본국 재판소에서 증거조사가 전부 완료된 상황에서 원고들의 패소판결이 확정된 이상, 무용한 절차를 우리나라에서 반복하는 것은 재판의 적정, 신속, 효율이라는 어떠한 측면에서도 타당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원고들이 이미 패소판결을 받은 이상 판결의 실효성이 문제될 여지가 없고, 피고가 일본국 법인으로서 그 재산의 대부분이 일본국에 위치한 이상 실효성의 측면에서는 일본국이 훨씬 용이합니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1동 1487-1
(정림빌딩 5층 501호)
변호사 유 상 순 법률사무소
전화 : (051)506-7997(代)
FAX : (051)506-7970

세번째, 법정지와 당사자 및 분쟁사안과의 실질적인 관련성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원고들이 주장하는 불법행위는 일본국내 구 미쓰비시중공업 공장에서 발생한 강제노동 및 원폭투하후의 차별적인 구호조치라는 내용이고 미불임금 역시 일본국 내 구 미쓰비시중공업 공장에서의 미불금에 대한 내용으로서 그 원인사실이 모두 일본국 법인인 과거의 구 미쓰비시중공업의 일본국내 공장에서 이루어진 일이고, 원고들 주장의 권리의 상대방 당사자인 구 미쓰비시중공업이 일본국 법인이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 당사자 및 분쟁사안은 모두 대한민국 보다는 일본국과 실질적인 관련성을 가집니다.

한편 1심 법원은 외국법인이 대한민국 내에 사무소, 영업소 또는 업무담당자의 주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증거수집의 용이성이나 소송수행의 부담 정도 등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응소를 강제하는 것이 민사소송의 이념에 비추어 보아 심히 부당한 결과에 이르게 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그 분쟁이 외국법인의 대한민국 지점의 영업에 관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 법원의 관할권을 인정하는 것이 조리에 맞는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0. 6. 9. 선고 98다35037 판결)을 원용하면서, 이 사건 제소 당시에 피고가 부산 중구 중앙동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었던 것을 이유로 하여 이 사건에 있어서 대한민국 법원이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이러한 1심 법원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부당합니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1동 1487-1
(정림빌딩 5층 501호) 변호사 유 상 순 법률사무소 전화 : (051)506-7997(代)
FAX : (051)506-7970

우선, 위 부산 연락사무소는 민사소송법상 보통재판적의 인정근거가 되는 사무소나 영업소 또는 업무담당자의 주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위 부산 연락사무소는 실질적인 피고 회사의 영업에 관여한 바 없으며, 단순히 피고의 직원이 한국으로 출장을 가는 경우 숙소의 예약 등을 담당하는 등의 부수적인 업무를 수행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현재 위 연락사무소는 폐쇄되었고, 피고는 한국 내에 어떠한 지사나 영업소 등을 설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피고의 한국 자회사인 한국미쓰비시중공업 주식회사가 설립되어 있으나, 독립된 법인으로서 피고의 지사나 지점이 아닙니다.

그리고 1심 법원이 원용하는 위 대법원 판결에서도 사무소나, 영업소 또는 업무담당자의 주소에 기하여 외국법인에 대해서 국제재판관할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증거수집의 용이성이나 소송수행의 부담 등 구체적인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그 응소를 강제하는 것이 민사소송의 이념에 비추어 보아 심히 부당하지 않을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바,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 사건에 대해서는 일본국에서 이미 선행의 확정판결이 존재하기 때문에 피고에 대해서 제차 동일한 재판을 한국 내에서 반복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민사소송의 이념에 비추어 보아 심히 부당하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의 부산 연락사무소가 피고의 사무소나 영업소 또는 업무담당자의 주소에 해당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위 부산 연락사무소의 업무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이 사건 소송에서 이를 근거로 피고에 대해서 국제재판관할이 인정될 수는 없습니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1동 1487-1
(정림빌딩 5층 501호)
변호사 유 상 순 법률사무소
전화 : (051)506-7997(代)
FAX : (051)506-7970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제사법 신설 이전의 대법원 판례에 의하여 인정된 국제재판관할의 인정원칙에 비추어 볼 때 사건에 있어서 대한민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되지 않을 뿐더러, 피고의 과기 부산 연락사무소는 법인의 사무소나 영업소, 업무담당자의 주소에 해당하지 않을 뿐더러, 가사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그 업무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부산 연락사무소의 존재를 근거로 하여 국제재판관할권을 인정하는 것은 민사소송의 이념에 비추어 볼 때 심히 부당한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 대한민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된다는 1심 법원의 판단은 어느 모로 보더라도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각하되어야 합니다.

나. 국제적 중복제소 주장의 철회

제1항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하여 동일한 청구원인으로 일본국에서 제기한 선행사건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1심 및 항소심 판결이 일본 최고재판소의 상고기각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선행사건에 대한 일본 재판소의 확정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17조에서 정한 승인요건을 충족하여 이미 현재 우리나라에서 그 효력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일본 재판소의 확정판결이 향후 우리나라에서 승인될 것이 예측됨을 전제로 한 1심에서의 국제적 중복제소 주장을 유지할 실익이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철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1동 1487-1
(정림빌딩 5층 501호) 변호사 유 상 순 법률사무소 전화 : (051)506-7997(代)
FAX : (051)506-7970

다. 국제법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의 부존재

국제법상 사인이 권리주체로 인정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지배적인 학설이라고 할 것인바, 가사 사인이 국제법상 권리주체가 될 수 있다고 보더라도, 1심 판결이 적절히 판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그와 같이 인정할 수 있기 위해서는 각 조약 등 국제법 자체에서 해당 규범의 위반행위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당한 사인에게 그 피해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 및 그에 관한 구체적인 요건, 절차, 효과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여 국내법적인 보완이 없이도 직접 적용이 가능하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 국제법에 따른 사인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국내법적인 입법조치가 행하여진 경우에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들이 주장하는 국제법은 이와 같은 사인에게 권리를 부여하기 위한 요건을 충족하고 있지 못합니다. 우선 헤이그 육전규칙이나 뉘른베르크 국제전범재판규칙, 강제노동금지에 관한 국제노동기구 제129호 조약 등에는 모두 개인의 권리행사를 위한 요건, 절차, 효과에 대한 내용을 규정한 조항이 없고, 우리나라에서 위 각 국제법규에 기한 개인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입법이 이루어진 바 없음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실제 원고들도 이러한 규정이나 국내입법의 존재에 대해서는 어떠한 주장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1동 1487-1
(정림빌딩 5층 501호)
변호사 유 상 순 법률사무소
전화 : (051)506-7997(代)
FAX : (051)506-7970

그리고 국제인도법이나 전쟁범죄나 노예제에 대한 국제관습법의 경우 그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인이 직접 이를 위반한 국가 등을 상대로 하여 손해배상을 제기할 수 있다는 국제관습법이 확립되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습니다. 오히려 원고들이 동일한 주장을 일본국의 선행사건에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재판소가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을 배척한 것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을 제13호증), 문명국가에서 그러한 원칙은 아직 확립된 바 없다고 인정함이 상당할 것입니다.

라. 청구권 협정에 효력에 대해서

1심 판결은 한일청구권협정에 기하여 원고들이 주장하는 손해배상청구권 및 미불임금청구권이 모두 소멸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해서 판단을 하지 아니하고 소멸시효 기간 완성을 이유로 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한일청구권협정의 조문을 보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청구권은 소멸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이 점에 있어서도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할 것입니다.

한일 청구권협정은 제2조 제1항에서 양 체약국은 양 체약국 및 그 국민(법인을 포함함)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양 체약국 및 그 국민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는 것을 확인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청구권협정 제2조 제3항에서는 일방체약국 및 그 국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1동 1487-1
(정림빌딩 5층 501호) 변호사 유 상 순 법률사무소 전화 : (051)506-7997(代)
FAX : (051)506-7970

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으로서 본 협정의 서명일에 타방체약국의 관할 하에 있는 것에 대한 조치와 일방체약국 및 그 국민의 타방체약국 및 그 국민에 대한 모든 청구권으로서 동일자 이전에 발생한 사유에 기인하는 것에 관하여는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구권협정으로 최종적으로 해결되어 그에 대하여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게 되는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청구권의 범위에 대해서, 합의의사록(I) 제2조 (g)에서는 한일회담에서 한국측으로부터 제출된 한국의 대일청구요강(소위 8개 항목)의 범위에 속하는 모든 청구가 포함된다는 점과, 그에 대해서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다는 점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 8개 항목에는 피징용 한국인의 미수금, 보상금 및 기타 청구권의 반제청구(제5항)와, 한국인의 일본인에 대한 개별적 권리행사(제6항)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일 양국 사이에 체결된 국제조약인 청구권협정은 대한민국 헌법에 의하여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따라서 원고들을 포함한 대한민국 국민들의 일본국 국민들에 대한 모든 청구권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되어, 어떠한 권리행사도 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에서 청구하는 미불임금 및 손해배상청구권은, 가사 그러한 미불임금이나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권협정 제2조 제1항 및 제3항에 의하여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되어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1동 1487-1
(정림빌딩 5층 501호)
변호사 유 상 순 법률사무소
전화 : (051)506-7997(代)
FAX : (051)506-7970

원고들은 국가가 다른 국가와의 합의로 그 국민의 의사와 무관하게 국민의 청구권을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은 있을 수 없으며 국민의 청구권을 처분할 수 있는 경우란 예컨대 국민들이 자신의 청구권을 정부에게 처분하도록 위임한 경우이거나 청구권 처분에 관한 다른 국가와의 조약을 국민들이 승인한 경우 등이라고 하면서 청구권 협정은 대한민국 정부가 자국 국민에 대한 외교적 보호권만을 포기한 것일 뿐이라고 해석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구권협정은 당시의 헌법에 따라 국회에서의 비준을 받아 발효한 것인바, 이와 같이 헌법상의 위임을 받아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소멸시킬 수 있음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며, 이는 헌법상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조약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청구권협정에 의하여 개인의 대일 청구권이 소멸하고 대한민국이 이에 대한 보상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은 청구권협정 체결 이후에 그 후속조치로 입법된 청구권자금의운용및관리에관한법률 및 그에 근거한 대일민간청구권신고에관한법률과 대일민간청구권보상에관한법률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대한민국 정부는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일본국에서 수령한 청구권자금에 기하여 1975. 7. 1.부터 1977. 6. 30. 까지 사이에, 83,519건에 대하여 9,187,693,000원의 보상금을 현금 또는 보상증권으로 지급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1동 1487-1
(정림빌딩 5층 501호)
변호사 유 상 순 법률사무소
전화 : (051)506-7997(代)
FAX : (051)506-7970

이러한 대한민국 정부의 기존 보상은 인명피해의 경우 보상대상을 사망자로 한정하고 있어서 사망한 것이 아닌 원고들과 같은 피해자의 경우 보상에서 누락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당시 한국정부의 대응이 불충분하였다는 문제에 불과하고, 일단 청구권 협정의 대상에 포함된 권리의무관계는 그 국내적 보상실시나 그에 대한 개인적 만족여부와 관계없이 협정의 효력에 의하여 더 이상 청구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해석하여야 하며 보상대상에서 제외된 자의 권리보호는 대한민국 정부와 그 국민간의 문제로만 남게 된다고 하여야 할 것입니다.

갑 제21호증의 15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2005. 8. 26. 한일회담 문서공개 후속대책 관련 민관공동위원회는 한일청구권협정 관련 외교문서 공개와 관련하여 청구권협정을 통하여 일본으로부터 받은 무상 3억불은 개인재산권(보험, 예금 등), 조선총독부의 대일채권 등 한국정부가 국가로서 갖는 청구권, 강제동원 피해보상 문제 해결 성격의 자금 등이 포괄적으로 감안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는 전제하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령한 무상자금중 상당금액을 강제동원 피해자의 구제에 사용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고 본 바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 제기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가 2006. 9. 25.자로 국회에 일제강점하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을 제12호증). 위 법안에 의하면 1938. 4. 1.부터 1945. 8. 15. 사이에 군인,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1동 1487-1
(정림빌딩 5층 501호)
변호사 유 상 순 법률사무소
전화 : (051)506-7997(代)
FAX : (051)506-7970

군무원 또는 노무자 등으로 국외로 강제동원되었던 사람들 중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여 사망, 행방불명, 부상에 대한 위로금 지급과 일본국 또는 일본 기업등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었던 급료 등에 대한 미수금지원금 지급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위 법률안 제4조 제1항은 사망, 행방불명자에 대한 위로금 지급을 정하면서 과거 대일민간청구권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금전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위로금에서 일정 액수를 공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위 법안의 내용은 과거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하여 강제동원된 한국인들의 사망이나 부상등의 피해에 대한 배상청구권 및 급료 등의 미수금 청구권이 모두 소멸되었다는 점 및 이러한 개인청구권이 소멸되어 이를 대한민국정부가 보상하여야 한다는 점, 그런데 과거 사망자에 대한 보상만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대한민국 정부가 위 법률안을 통하여 추가적인 보상조치를 취하는 것이라는 점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한편 만약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국가가 개인의 청구권을 포기할 수 없다고 본다면, 1951. 9. 8. 샌프란시스코에서 연합국과 일본간에 체결된 대일평화조약 제4조 (a)의 제2조에 규정된 지역에 있는 일본 및 일본국민의 재산 및 현재의 해당지역의 주민(법인을 포함)에 대한 청구권(채권을 포함)의 처리와 일본에 있어서의 전기 및 주민의 재산 및 일본과 일본국민에 대한 청구권(채권을 포함)의 처리는 일본과 전기 당국간의 특별협정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조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1동 1487-1
(정림빌딩 5층 501호)
변호사 유 상 순 법률사무소
전화 : (051)506-7997(代)
FAX : (051)506-7970

항 및 제4조 (b)의 일본은 제2조 및 제3조에 규정된 지역의 미합중국 군정에 의하여 취하여진 일본과 일본국민의 재산의 처리의 효력을 승인한다라고 한 규정도 일본국민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외교적 보호권 포기 이상의 효력은 없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연한 귀결상 일본국민이 당시 미합중국 군정에 의하여 소유권 등의 권리가 박탈되고 그 뒤 대한민국 정부로 소유권이 이전된 귀속재산이나 권리에 대하여 대한민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 그 청구를 인용하여야 한다는 결론에 다다르게 됩니다. 이러한 결론이 부당하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청구 역시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하여 소멸되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또한 원고들이 제출한 참고자료들에 의하면 한일청구권협정상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청구권을 분리하여 재산, 권리 및 이익은 한일청구권협정상 소멸되었다고 하더라도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으며, 원고들이 주장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청구권에 속하여 소멸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해석론이 인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해석론은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서 일본에서 입법, 시행된 재산권조치법에서 소멸대상으로 재산, 권리 및 이익만을 언급하고 청구권이 명시적으로 언급되지 않은 것에 기초한 주장으로서 일본과 같이 별도의 재산권조치법을 제정하지 않은 우리나라의 법해석상 성립할 수 없는 견해일 뿐만 아니라, 일본 정부 역시 청구권에 대해서는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하여 외교적 보호권만 소멸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소멸하였다는 입장(을 제13호증)이라는 점에서 어느 모로 보더라도 이유 없는 부당한 주장입니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1동 1487-1
(정림빌딩 5층 501호) 변호사 유 상 순 법률사무소 전화 : (051)506-7997(代)
FAX : (051)506-7970

마. 피고와 구 미쓰비시 중공업의 동일성 여부에 대해서

1심에서 자세히 설명드린 바와 같이 피고는 2차 세계대전 당시의 구 미쓰비시 중공업과 동일 회사가 아니라, 회사경리응급조치법과 기업재건정비법에 의하여 구 미쓰비시 중공업이 해산되면서, 새롭게 설립된 기업재건정비법상의 제2회사들(중일본중공법 주식회사, 서일본중공업 주식회사, 동일본중공업 주식회사)이 합병하여 설립된 신설법인으로서, 구 미쓰비시 중공업의 채무 중에서 1946. 8. 11. 오전 0시의 기준시 이전에 발생한 구 회계계정상의 채무를 승계한 바 없습니다. 그리고 원고들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들의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손해배상채권 및 미불임금채권은 구 회계계정상의 채무임이 명백합니다.

1심 판결은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회사경리응급조치법과 기업재건정비법 등 일본 국내법이 전후 처리를 위한 특별한 목적으로 제정된 기술적인 입법에 불과하고, 구 미쓰비시 중공업이 피고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회사의 인적, 물적 구성에 기본적인 변화가 없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구 미쓰비시 중공업과 피고 사이에 동일한 법인격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1심 판결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매우 부당합니다.

우선 구 미쓰비시 중공업과 피고의 동일성을 판단하기 위한 준거법이 과연 어느 국가의 법률인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인바, 회사의 설립, 권리능력의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1동 1487-1
(정림빌딩 5층 501호) 변호사 유 상 순 법률사무소 전화 : (051)506-7997(代)
FAX : (051)506-7970

유무와 범위, 행위능력, 해산, 분할, 합병 등으로 인한 법인격의 소멸과 권리 의무의 승계 등은 회사의 속인법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사건에 있어서 적용이 있는 구 섭외사법에서는 제29조에서 상사회사의 행위능력은 그 영업소 소재기의 법에 의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고, 속인법에 대한 명문의 규정이 없어 설립준거법주의와 본거지법주의 등 학설이 대립하고 있었으나, 이 사건의 경우에 있어서 어느 입장에 의하더라도 구 미쓰비시 중공업 및 피고의 속인법은 일본법입니다. 따라서 구 미쓰비시 중공업과 피고의 동일성 및 권리 의무의 승계 여부는 당시 일본국의 법률인 회사경리응급조치법, 기업재건정비법 등에 따라서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외국법의 해석 및 적용에 대해서 대법원은 일관되게 섭외적 사건에 관하여 적용될 외국법규의 내용을 확정하고 그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그 외국법이 그 본국에서 현실로 해석적용되고 있는 의미내용대로 해석적용되어야 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판시해 오고 있습니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70064 판결, 대법원 1996. 2. 9. 선고 94다30041,30058 판결, 대법원 1991. 2. 22. 선고 90다카19470 판결 등 다수). 따라서 이 사건에 있어서 구 미쓰비시중공업의 채무 중 어떠한 채무가 신계정에 속하는 채무로서 피고에게 승계되었고, 어떠한 채무가 구계정에 속하는 것으로서 피고에게 승계되지 않았는가라는 문제 역시, 외국법인 일본국의 회사경리응급조치법 및 기업재건정비법의 해석 적용의 문제로서 일본국에서 현실로 해석 적용되고 있는 의미 내용대로 해석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국 재판소는 이 문제에 있어서 원고들 주장과 같은 미불임금 및 손해배상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1동 1487-1
(정림빌딩 5층 501호)
변호사 유 상 순 법률사무소
전화 : (051)506-7997(代)
FAX : (051)506-7970

채권은 구계정에 속하는 것으로서 피고에게 승계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을 제1호증 판결문 중 二 피고 회사의 책임, 2 피고 회사에 의한 채무 승계 부분 참조, 번역문 제39면 내지 제43면).

그렇다면 앞서본 1심 판결의 판단은 외국법인의 동일성 및 권리 의무의 승계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준거법의 결정 및 그와 같이 결정된 외국법의 의미내용을 해석적용하는 원칙에 대한 법리 및 대법원의 판례를 반하는 것으로 위법하다고 할 것입니다. 비록 1심 판결이 결론에 있어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것은 타당하다고 할 것이나, 이 부분의 판단은 잘못되었음이 분명합니다.

참고로 앞서 설명드린 2008. 4. 3.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선고한 2005가합16473 손해배상 사건의 판결에서도 법원은 외국법인 당시 회사정리응급조치법과 기업재건정비법의 해석에 대하여, 그 본국인 일본 재판소의 해석에 따라서 위 각 법률에 의하여 신설된 제2회사들은 구 회계계정상의 채무를 승계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을 제16호증).

한편 1심 판결은 피고가 피고 기업의 역사를 발행하면서 구 미쓰비시 중공업을 기업 역사의 한 부분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피고가 발간한 기업 역사에 구 미쓰비시 중공업을 인급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법인의 동일성 및 권리 의무의 승계 여부와 같은 법적인 문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1동 1487-1
(정림빌딩 5층 501호) 변호사 유 상 순 법률사무소 전화 : (051)506-7997(代)
FAX : (051)506-7970

제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단순히 피고가 구 미쓰비시 중공업에서 회사경리 응급조치법 및 기업재건정비법에 의하여 신설되었다는 점을 언급하는 취지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가지고 피고가 구 미쓰비시 중공업의 책임을 승계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원고들은 일본 나고야 고등재판소에서 피고가 구 미쓰비시 중공업과 별개의 회사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나고야 고등재판소는 근로정신대원으로 구 미쓰비시 중공업의 공장에서 근무하였던 위 사건의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나고야 지방재판소의 판결이 타당하다고 하여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며, 최근 나고야 고등재판소의 판결에 대한 위 사건의 원고들의 상고가 기각되어 나고야 고등재판소의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바. 소멸시효

한편 원고들이 피고에 대해서 청구하고 있는 손해배상 채권 및 미지급임금 채권이 모두 시효기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분명하고, 1심 판결 역시 이를 이유로 하여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1심의 판결에는 원고들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전혀 없다고 할 것인바, 소멸시효와 관련한 원고들의 항소이유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1동 1487-1
(정림빌딩 5층 501호) 변호사 유 상 순 법률사무소 전화 : (051)506-7997(代)
FAX : (051)506-7970

사. 공탁에 관한 주장의 철회

1심에서 행한 공탁과 관련된 주장은 철회하도록 하겠습니다.

3. 원고들의 항소이유인 소멸시효에 대한 1심 판단의 위법성 여부에 대해서

가. 소멸시효의 기산점

1심 법원이 적법하게 판단한 바와 같이, 원고들 주장의 불법행위가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미 불법행위일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도과하였음이 역수상으로 분명하고, 가사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대한민국과 일본국 사이의 국교가 정상화된 1965. 6. 22.부터 시효를 기산하더라도 이미 소멸시효 기간이 완성되었습니다. 더욱이 원고들의 주장 및 일본국 판결(을 제13호증)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들을 포함한 재한 피폭자들은 일본과의 국교가 수립된 1967년경부터 사단법인 한국원폭피해자협회를 설립하고 1974년 그 하부조직으로 한국원폭피해미쓰비시징용회를 설립하여 1974. 8. 그 회원들이 피고를 방문하여 강제징용으로 인한 배상금 및 미수금의 지급을 촉구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늦어도 1974. 8.경에는 원고들은 이사건에서 주장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주장할 수 있었을 것이므로 그 때부터 기산하더라도 이미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도과하였음은 역수상으로 명백합니다. 한편 유사한 쟁점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16473 손해배상 사건에서 서울중앙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1동 1487-1
(정림빌딩 5층 501호) 변호사 유 상 순 법률사무소 전화 : (051)506-7997(代)
FAX : (051)506-7970

지방법원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한 사실은 이미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을 제16호증).

이에 대해서 원고들은 한일 국교정상화 이전에는 국교단절로 인하여 권리

더욱이 원고들의 위와 같은 주장은, 청구권협정에 의하여 외교적 보호권만이 소멸되었다는 것은 일본정부의 입장으로서 그 동안 대한민국 정부는 청구권협정의 효력에 대해서 명확한 의견표명을 하지 않아왔다는 점, 그럼에도 대한민국 정부의 의견표명 여부와 무관하게 원고들이 포함된 한국원폭피해미쓰비시징용회의 회원들이 1974. 8. 피고를 방문하여 강제징용으로 인한 배상금 및 미수금의 지급을 촉구하는 등 실제 권리행사를 한 바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타당성을 인정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할 것입니다.

나. 소멸시효의 원용이 신의칙 위반인지 여부

한편 원고들은 피고가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어서는 아니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원고들은 원고들에 대한 피고의 불법행위의 위법성과 피해의 중대성이 크며, 피고가 한국원폭피해미쓰비시징용회의 회원들과의 면담에서 전향적인 자세를 취해서 보상을 할 것과 같은 언동을 하여 원고들을 기망하였고, 피고가 구 미쓰비시 중공업의 채무를 승계하지 않았다는 기망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멸시효의 원용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는 경우란,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1동 1487-1
(정림빌딩 5층 501호)
변호사 유 상 순 법률사무소
전화 : (051)506-7997(代)
FAX : (051)506-7970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또는 일단 시효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였거나, 채권자 보호의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다른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채무 이행을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입니다(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71881 판결 등 다수).

그러나 이 사건에 있어서는 대법원 판례에서 들고 있는 위와 같은 사정이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원고들 주장과 같이 단순히 불법행위의 피해가 크다는 이유로 소멸시효의 원용이 부정된다면, 현실적으로 소송이 제기될 정도의 불법행위의 경우 모두 피해가 중대하여 소멸시효의 원용이 불가능하게 될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불법행위에 있어서는 소멸시효제도가 유명무실하게 될 것인바, 이러한 결론은 소멸시효제도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 부당한 결론입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들이나 한국원폭피해미쓰비시징용회에 대해서 피고가 구 미쓰비시 중공업의 채무를 승계했다거나, 또는 피고가 원고들을 비롯한 피징용자들의 손해를 보상할 법적 책임을 부담하고 이를 이행하겠다거나 하는 언행을 전혀 한 바가 없으며, 원고들의 소송제기를 방해한 사실도 전혀 없습니다. 실제 이 점에 있어서 원고들은 막연한 주장만 하고 있을 뿐이고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1동 1487-1
(정림빌딩 5층 501호) 변호사 유 상 순 법률사무소 전화 : (051)506-7997(代)
FAX : (051)506-7970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적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일본국에서의 확정판결에서도 그와 같은 사실관계가 인정된 바 없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신의성실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할 것입니다. 참고로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16473 손해배상 사건에서도 위 사건의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이라는 위 사건의 원고들의 주장은 배척된 바 있습니다(을 제16호증).

4. 결 론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국제재판관할권이 없는 대한민국 법원에 제기된 것으로서 위법하여 각하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일본 최고재판소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반하는 것으로서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할 것이며, 원고들의 청구권은 시효기관의 경과에 의하여 소멸한 것도 역수상 분명합니다. 그외에도 한일청구권협정, 구 미쓰비시 중공업의 책임이 별개의 독립된 법인인 피고에게 승계되지 않는다는 점에서도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1심 판결의 결론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여 주실 것을 앙망합니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1동 1487-1
(정림빌딩 5층 501호)
변호사 유 상 순 법률사무소
전화 : (051)506-7997(代)
FAX : (051)506-7970

2008. 11. .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상순

부산고등법원 제5민사부 귀중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1동 1487-1
(정림빌딩 5층 501호)
변호사 유 상 순 법률사무소
전화 : (051)506-7997(代)
FAX : (051)506-7970

준 비 서 면

사 건 : 2007 나 4288 손해배상(기)
원 고 : 이 근 복 외 4
피 고 : 미쓰비시중공업주식회사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들의 소송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변론을 준비합니다.

다 음

1. 피고는 본건 항소심에서 제출한 준비서면을 통해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주장을 하면서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가. 일본 선행사건의 확정 및 기판력 적용 주장에 대해

피고는 히로시마재판소 및 히로시마고등재판소가 원고들의 청구에 대해 제척기간 및 소멸시효 기간완성과 한일청구권협정에 근거한 일본의 재산권조치법의 제정을 이유로 기각하였는바, 이러한 일본 재판소의 판결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일본 재판소의 판결이 민사소송법 제217조의 승인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기에 원고들이 동일한 소송을 우리나라 법원에 제기하는 것은 위 일본 재판소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는 우리 헌법 및 재판례에 정면으로 반하는 주장입니다.

우선 일본의 재산권조치법이란 일본의 국내법이면서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재산, 권리, 이익을 어떠한 보상 및 대상조치도 없이 소멸시키는 것으로 우리 헌법상 재산권 보장의 정신에 정면으로 반하는 법률입니다. 위 재산권조치법은 일본에서도 외국인에 대한 재산권을 일방적으로 소멸시켜

일본의 헌법에도 반하는 위헌 법률임이 다투어 지고 있는데 이러한 법률을 피해 당사국인 우리나라의 법원이 승인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아울러 일본 히로시마지방재판소 및 히로시마고등재판소의 판결은 어디까지나 일제 강점기가 법률적으로 유효하다는 전제하에서 원고들을 강제 동원한 징용행동이 합법적 공권력의 행사임을 전제로 판단한 것인데 이를 삼일운동으로 성립한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우리 헌법기관이 승인한다는 것은 우리 헌법상 가능하지 아니합니다. 일제강점기의 강제동원과 둘러싼 불법행위의 구성요건 자체가 일본과 우리나라는 동일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준거법을 우리 민법으로 보고 있는 원심의 판결이 우리 헌법 정신에 부합하는 것입니다. 이점에서도 민사소송법 제217조의 승인요건을 갖추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그 이외에도 일본에서는 불법행위와 관련하여 20년의 기간을 제척기간으로 보고 있으나 우리 대법원은 우리 민법상 10년의 기간에 대해 소멸시효로 보고 있고, 위 일본 히로시마지방재판소 및 히로시마고등재판소의 판결은 전전의 미쓰비시중공업주식회사와 전후의 미쓰비시중공업주식회사가 법적 동일성이 없다고 보아 부당하게 피고의 책임을 면책시키고 있으나 이는 같은 일본의 2007. 5. 31.자 나고야고등재판소의 판시에도 반하여 부당하고, 원심의 부산지방법원의 판시와도 저촉되는 것이며, 한일청구권협정의 법적 효력과 관련되어 우리 정부가 2005. 8. 16. 한일청구권협정 관련 문서를 전면 공개하면서 밝힌 법적 입장과 모순되는 등, 우리 법원이 위 일본 히로시마지방재판소와 히로시마고등재판소의 판결을 승인하리라는 것은 사실에 반하는 부당한 주장입니다.

나. 한일청구권협정의 효력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

피고는 한일청구권협정에 기하여 원고들이 주장하는 손해배상청구권 및 미불임금청구권이 모두 소멸하였다고 주장을 하면서 한일 양국 사이에

체결된 국제조약인 한일청구권협정은 대한민국 헌법에 의하여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할 것이므로, 이에 따라서 원고들을 포함한 대한민국 국민들의 일본국 국민들에 대한 모든 청구권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되어, 어떠한 권리행사도 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할 것이라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즉 피고의 주장에 의하면 한일청구권협정과 같은 국제조약이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져 한일청구권협정만에 의해 자동집행력을 가지기에 원고들의 권리가 소멸된다는 취지로 해석이 되나, 이는 원고들이 피고에 대해 국제조약에 기해 청구를 한 부분에 대해 ' ---조약이 그대로의 형태로 국내법으로서 수용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국가간의 권리의무가 아니라 개인의 권리의무에 대해 정한 것이고, 권리의무의 발생요건, 효과, 절차 등이 조약에 명확하고 상세하게 정해져 있고, 나아가 이를 보완, 구체화하는 법령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국내에서 집행 가능한 경우일 것과, 체약국이 이를 직접 국내 재판소에서 집행 가능하도록 할 의사가 있을 필요가 있다---'고 일본 히로시마고등재판소의 판결에 의해 배척한 그 논리 만에 의하더라도 논리모순입니다. 한일청구권협정에 권리의무의 소멸과 관련된 요건, 효과, 절차 등이 어디에서 정하여져 있지 않고 이를 보완하는 한국내의 어느 법령도 있지 아니한데 한일청구권협정에 기해 원고들의 권리가 소멸되었다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합니다.

이에 대한 유일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가합 16473호 판결에 의하면, '대한민국과 일본 양국은 한일청구권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상대국이 취하는 국내조치에 대하여 외교보호권을 행사하지 않고, 재산, 권리, 이익, 청구권에 대하여 외교보호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하며 상대국이 어떠한 국내조치를 취할지는 각 국의 전정에 맡기기로 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 대한민국 국민의 일본국 및 그 국민에 대한 청구권자체가 소멸되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위자료 청구권이 청구권협정에 의해 소멸한 것은 아니라고 한 것이다'고 적정하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피고는 만약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국가가 개인의 청구권을 포기할 수 없다고 한다면, 일본 국민이 대한민국 정부로 소유권이 이전된 귀속재산이나 권리에 대해 대한민국 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하면 그 청구를 인용하여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는 논리의 비약입니다. 일본의 침략전쟁 및 불법강점에 기해 취득된 우리 헌법상 보호받을 수 없는 일본인의 재산을 우리 헌법이 보호하여야 한다는 헌법적 근거는 무엇인지 의문이고, 극히 최근 일본에서 공개되고 있는 일본 정부의 문서(일한청구권조항과 재한 사유재산등에 대한 국내보상문제, 1965.9.1.)에 의하면 '일본 국민의 재한 재산권으로 제2조 3항에서 말하는 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존재하지 않으며, 재한 재산 중 38도선 이남의 분은 1945년 군령 33호에 의해 몰수되었고, 평화조약 제1조에 의해 효력이 승인되었는바---'라는 부분이 나타나는바, 일본이 패전으로 인해 대일평화조약을 맺으며 입은 패전국의 손해를 피해국인 우리 나라에 주장을 할 수 있고, 주장을 하면 우리 법원이 인용을 하여야 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합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공개된 일본의 위 문서에 의하면 제2조 3항의 규정의 의미는 국가가 국제법상 가지는 외교보호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한 것이고 일반적으로 외교보호권이란 국제법상 국제법의 주체인 국가에 인정된 고유의 권리로 극히 고도의 정치적 판단에 의해 그 행사, 불행사가 결정되는 것으로 국가가 그 판단에 대해서 자국민에 대해서 보상의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 정부도 지지 않는 보상의 의무를 귀속재산과 권리에 대해 일본 국민이 우리 정부를 상대로 우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 우리 법원이 그 청구를 인용하여야 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합니다.

다. 소멸시효의 주장에 대한 부분

피고는 원고들 주장과 같이 단순히 불법행위의 피해가 크다는 이유로 소멸시효의 원용이 부정된다면 현실적으로 소송이 제기될 정도의

불법행위의 경우 모두 피해가 중대하여 소멸시효의 원용이 불가능하게 되고, 피고가 원고들을 비롯한 피징용자들의 손해를 보상할 법적 책임을 부담하고, 이를 이행하겠다거나 하는 언행을 전혀 한 바가 없으며, 원고들의 소송제기를 방해한 사실도 없으므로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주장이 신의성실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할 수 없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심의 항소이유에 해당하는 준비서면의 주장을 원용합니다. 피고는 단순한 불법행위와 전쟁 범죄 등 중대 인권침해피해를 동일한 것으로 주장하는 바, 강제동원, 피폭, 방치의 3중 피해를 입은 원고들의 피해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피고는 원고들에게 신의칙상 할 수 없는 행위를 하였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07.5.31. 나고야고등재판소에서는 "---구 회사와 새로이 설립된 3개의 제2회사 간에는 인적으로 3사의 초대사장이 어느 쪽도 구 회사의 상무이사인 점, 종업원도 특단의 절차를 거침이 없이 신회사로 인계된 점, 물적으로는 상기 신계정에는 회사의 목적으로 현재하고 있는 사업의 계속 및 전후 산업의 회복부흥에 필요한 것이 포함되어 있었고 실태로서는 사업의 계속에 필요한 인적 • 물적 재산이 신회사 3사에 분할하여 인계된 점--- 이상에 의하면 구회사와 신회사간에는 실질적으로 동일성이 있고, 신회사가 구 회사의 위법성에 대해 일체 관여하지 않아서 책임을 질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여지가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고 판단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는 행위를 지금도 하고 있는 피고에게 소멸시효의 원용을 인정하는 것 자체가 새로운 신의칙 위반이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일본최고재판소는 2007. 4. 27. 니시마츠건설주식회사에 대한 판결에서 국가간의 전쟁배상포기는 개인의 청구권을 실체적으로 소멸시키는

것은 아니고, 단지 재판상 소권을 소멸시킨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들과 같은 피해자들에 대해 책임이 있는 자들의 자발적인 책임 이행이 강하게 요구된다고 설시하였고, 한일청구권협정 역시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의 틀 안에서 맺어진 것으로 국가간의 행위이므로 위 판시의 사정 범위 내라고 해석이 되는 바, 위 판시취지에 의하면 재판상 소권이 소멸된 청구권이 시효의 대상이 되는 근거를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결국 이는 원고들의 청구권이 통상의 시효제도의 본질과 부합하지 않음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시효제도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겠다 등의 취지에서 법적 정의를 구현하기 위한 하위 개념으로 성립된 것인데 원고들과 같은 전쟁 피해자들의 최근까지 권리 구제를 위한 노력을 보면 도저히 권리 위에 잠자고 있었기에 보호하지 않겠다는 것은 상위 법적 가치인 법적 정의에 현저히 반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일본에서 동종의 전후 보상 재판에서 시효나 제척기간이 배척되는 흐름이 강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가해국인 일본의 사법부에서 조차 시효나 제척기간을 피해자들의 오랜 투쟁의 결과 본건과 같은 사건들에게는 적용하지 않게 된 것이 최근의 정황인데, 피해국인 우리 사법부가 이를 원용한다는 것은 우리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아니합니다.

2. 본건과 같은 전후 보상 재판은 일본에서 1990년대에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약 20년에 걸친 판례의 축적이 있어 왔고, 그런 과정에서 비록 전쟁피해자들이 패소하는 사건이 많았지만 법리적으로 많은 진전을 이루어 왔습니다. 국가무답책이론, 별개회사론, 시효 및 제척기간 등의 장애물들이 하나씩 극복이 되어 왔습니다.

우리 나라에서도 최근에 이러한 전후 보상 재판이 제기되어 있으나 우리 판례의 부족으로 법리적으로 어려운 쟁점에 대해 불명확한 판결이 나오고 있으나 이는 초기 불가피한 현상이라 할 것이고, 동종 사건의 심리를 통해

향후 문제점은 극복이 되어 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일본에서 동종의 사건들이 패소되는 대부분의 장벽은 극복이 되었고, 마지막 남은 장애물이 한일청구권협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 최고재판소도 위 국가간의 맺은 협정으로 인해 일본 정부 및 기업이 법적으로 이행을 강제할 수 없으나 그 실체적 권리는 남아 있는 것이므로 자발적 이행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위 청구권협정의 법적 해석을 달리하는, 우리나라에서 법리적으로 피해자들이 패소할 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피해자분에게 정의를 회복시켜 주는 판단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2008. 12.

위 원고들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 일
담당변호사 최 봉 태
법무법인 부 산
담당변호사 정 재 성

부산고등법원 귀중

준 비 서 면

사 건 2007나4288 손해배상(기)

원 고 망박창환외 소송수계인 박재훈외 4

피 고 미쓰비시중공업 주식회사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 소송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변론을 준비합니다.

다 음

1. 대한민국 내에서의 진행상황과 관련한 원고들의 주장에 대해서

원고들도 인정하고 있는 것과 같이,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피해자지원법"이라고만 합니다)이 제정되어 그에 따라서 일부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정부의 위로금이 지급되었다는 점은,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서 원고들 주장의 불법행위청구권이 일본국 개인이나 구 미쓰비시중공업과 같은 일본의 개개 법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전부 해결되었고, 그에 대한 배상책임은 청구권 자금을 공여받은 대한민국 정부와 대한민국 국민 사이에서 입법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정이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원고들은 한일청구권협정과 관련하여 원폭피해자들이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공권력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이러한 점 역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1동 1487-1 (정림빌딩 5층 501호) 변호사 유 상 순 법률사무소 전화 : (051)506-7997(代) FAX : (051)506-7970

2008-DEC-18 17:22 FROM:BUSAN LOW 951 7001 TO:0537536963 P.001/012

시 원고들 주장의 손해배상청구권이 구 미쓰비시중공업과 같은 일본의 개개 법인에 대한 문제라기 보다는, 한일청구권협정을 통해서 국민들의 배상청구권을 대신 행사하여 청구권자금을 공여받은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문제라는 점을 보여주는 사정이라고 할 것입니다.

더욱이 원고들이 포함된 한국인 원폭 피해자가 제출한 헌법소원심판청구서(갑 제22호증)을 보면, 그 청구취지가 "청구인들과 같은 한국인 원폭 피해자 문제가 위 협정(한일 청구권협정)의 체결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아 일본 정부에 그 법적 책임이 남아 있음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로 되어 있는바, 이러한 청구취지의 기재에 의하면 위 헌법소원은 결국 원고들이 원폭 피해자로서 일본 정부에 대해서 피폭자 지원을 요청할 권리에 대해서 한국 정부의 외교적 보호를 요청하는 취지라고 한 것이어서, 원고들이 제기한 위와 같은 헌법소원의 청구취지를 보더라도 원고들이 민간기업인 구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직접 손해배상을 구할 수 없다는 점은 명확하다고 할 것입니다. 민간기업인 구 미쓰비시중공업이 원자폭탄의 투하나 원고들과 같은 대한민국내 거주 피폭자에 대해서 일본국 법률인 "원자폭탄피폭자에 대한 원호에 관한 법률(이하 "피폭자원호법"이라고만 하겠습니다)"에 의하여 원호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어떠한 과실이나 책임이 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구 미쓰비시중공업과 법인격을 달리하는 피고에 대해서는 더더욱 원고들이 손해배상청구를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항소가 이유 없음은 명백하다고 할 것입니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1동 1487-1
(정림빌딩 5층 501호)
변호사 유상순 법률사무소
전화 : (051)506-7997(代)
FAX : (051)506-7970

2008-DEC-18 17:22 FROM:BUSAN LOW 951 7001 TO:0537536963 P.002/012

건 항소인들 및 을사건 항소인들이 피항소인 국에 대하여 위법한 402호 통달을 발표함으로써 정신적 손해에 관한 위자료 및 변호사비용으로서 동 항소인들 각각에게 120만엔원 및 이에 대한 소장 송달일 다음 날(갑사건 항소인들에 대해서는 2006년 1월 17일, 을사건 항소인들에 대해서는 같은 해 10월 1일)부터 각 지급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한도에서 이유가 있으나, 동 항소인들의 피항소인 국에 대한 나머지 각 청구, 동 항소인들의 피항소인 미쓰비시에 대한 각 청구 및 병사건 항소인들의 피항소인 료주에 대한 각 청구는 모두 이유가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는 점 및 갑 제25호증의 1로 제출된 피고 일본국의 상고에 대한 일본국 최고재판소의 판결에서 "402호 통달을 작성, 발출하고 또 그에 따라 실권취급을 계속한 상고인 담당자의 행위는 공무원의 직무상 주의의무에 위반하는 것으로 국가배상법 제1조 제1항의 적용상 위법한 것이고, 당해 담당자에게 과실이 있음도 명백하고 상고인에게는 상기 행위에 의해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는 점에서도 확인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처럼 일본정부가 2차세계대전이 종결된 이후에 원폭피해자에 대한 지원조치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피폭된 후 한국으로 귀국한 원고들과 같은 피폭자에 대한 지원조치를 제한하는 것이 위법하다는 점과 이 사건과는 아무런 법적인 관련성이 없는 것이 명백한 이상, 일본정부에 대해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에서의 쟁점인 구 미쓰비시중공업이나, 그와 별개의 법인인 피고의 손해배상책임 인정여부에 어떠한 영향도 미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1동 1487-1
(정림빌딩 5층 501호)
변호사 유 상 순 법률사무소
전화 : (051)506-7997(代)
FAX : (051)506-7970

2008-DEC-18 17:22 FROM:BUSAN LOW 951 7001 TO:0537536925 P.004/012

그리고 원고들은 갑 제26호증의 1에 기하여, 마치 일본국에서 원고들과 같은 피징용자들의 청구가 기각된 것은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하여 소권이 잃었다는 단 하나의 이유에 있으며, 따라서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더라도 청구권 그 자체는 유효하게 존속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갑 제26호증의 1은 원고들이 아닌 근로정신대1)로 징용된 다른 징용피해자들이 제기한 소송에 대한 논평에 불과하고, 오히려 을 제13호증으로 제출된 히로시마 고등재판소의 판결에서 명백한 바와 같이 일본국 재판소는 원고들 주장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기간의 완성으로 소멸되었다고 판단하면서, 부가적으로 청구권협정의 효력에 의하더라도 청구가 불가능하다고 판시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 주장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해서 일본국 재판소에서 다만 소권만이 소멸되었다고 판단한 것은 아니고, 시효기간의 완성으로 확정적으로 소멸하였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또한 원고들이 언급하는 니시마츠(西松)건설주식회사에 대한 일본 최고재판소의 판결은, 원고들이 중국인이고 피고가 구 미쓰비시중공업 주식회사나 피고회사가 아니라 니시마츠건설주식회사입니다. 특히 위 사건의 경우 원고가 중국인이라는 점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일본과 중국 사이에서는 한일청구권협정과 같은 정식의 조약이 체결되지 않았고, 1972년 9월 29일 베이징에서 공표된 일본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의 공동성명이 일본과 중국 사이의 기본조약으로서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해석되는데, 위 공동성명 제5조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정부는 중일 양국 국민의 우호를 위해 일본에 대한 전쟁

1) 이들은 정신대로 되어 있으나, 성적 노예화가 문제가 된 "위안부" 사건과는 다르며, 공장에서 착업한 여성근로자들입니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1동 1487-1
(정림빌딩 5층 501호) 변호사 유 상 순 법률사무소 전화 : (051)506-7997(代)
FAX : (051)506-7970

2008-DEC-18 17:23 FROM:BUSAN LOW 951 7001 TO:0537536963 P.005/012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인한 개인 청구권의 해결 및 그 과정에서 대한민국 정부나 일본 정부가 원고들과 같은 징용피해자들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점, 대한민국 정부가 일본 정부로부터 수령한 청구권자금을 사용하는 목적이나 절차가 적절한 것이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논란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원고들이 헌법소원 등을 제기한 바와 같이 원고들과 대한민국 정부 또는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 정부 사이의 문제라고 할 것이고, 수많은 역사적, 사회적인 관계가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어 구 미쓰비시 중공업과 같은 하나의 사기업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그와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는 피고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더더욱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을 제16호증의 1, 2　　일본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의 공동성명 및 그 번역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1동 1487-1
(정림빌딩 5층 501호)
변호사 유 상 순 법률사무소
전화 : (051)506-7972(代)
FAX : (051)506-7970

2008-DEC-18 17:23 FROM:BUSAN LOW　951 7001　TO:0537536963　P.007/012

2008. 12. 18

위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상순

부산고등법원 제5민사부 귀 중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1동 1487-1
(정림빌딩 5층 501호) 변호사 유 상 순 법률사무소 전화 : (051)506-7997(代)
FAX : (051)506-7970

2008-DEC-18 17:23 FROM:BUSAN LOW 951 7001 TO:0537536963 P.008/012

참 고 서 면

사　　건 : 2007 나 4288 손해배상(기)

원　　고 : 이 근목 외 4

피　　고 : 미쓰비시중공업주식회사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들의 소송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참고서면을 제출합니다.

다　음

1. 본건 항소심에서 원고들은 피고가 현재 한국에서 왕성한 영업활동을 하고 있음을 고려하고, 원고들이 고령으로 더 이상 재판을 통한 해결에는 시간적인 한계가 있어 화해나 조정의 의사를 밝혔음에도 피고는 원고들과 일체의 대화를 거부한다고 하는 어처구니 없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소송을 지연시키기 위해 한국내 피고의 연락사무소를 그 장소 및 형태등 실질에 아무런 변경도 없이 한국내 현지법인으로 전환시켜 송달 받을 곳을 없애 국제송달을 하게 하여 소송을 지연시키는 용납할 수 없는 태도의 연장선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2. 현재 한국내에서 피고가 아리랑 3호 발사용역업체로 최근 2009.1.12. 확정이 됨으로써 『'전범기업'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 한-일신시대

공증인가 SAMIL 법무법인 삼 일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33-2 범어빌딩 4층 대표전화. (053) 743-0031 FAX. (053) 753-6963

인가 』라는 제목등으로 한국내 피해자들의 반발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피고가 아리랑 3호 발사용역업체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사)한국원폭피해자협회와 연락을 한 자료를 보면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피고가 아닌 한국미쓰비시중공업㈜의 대표이사와 지속적인 접촉을 한 사실이 여지 없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피고는 일본내에서는 별개의 법인격이라고 주장하여 전쟁 당시 피고가 자행한 불법행위의 책임을 모면받으려 하고 있고 국내에서는 한국미쓰비중공업㈜를 설립하여 귀원의 송달을 지연시키고, 패소시 강제집행마저 회피하려는 자세를 보이고 있는 바 우리 법원의 준엄한 판결에 의해 이러한 정의롭지 못한 행위는 단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3.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는 같은 전범기업인 신일본제철주식회사의 주주인 포스코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재판부의 강제조정 결정문이 지난 2009.1.8. 원피고에게 송달이 된 상황입니다. 이 소송에서 원고들은 2007.4.27. 일본의 최고재판소에서 판결이 난 이후 더욱 중요하게 된 주주들의 책임이 관련하여 신일본제철주식회사의 주주인 포스코는 우리 헌법 규범에 따라서 침략전쟁으로 발생한 법익 침해를 방조, 조장하지 않을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회피하여 원고 1인당 1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고 있고, 제1심에서는 피고 포스코에 대해 사회적 책임을 인정하였고, 이어 항소심에서는 사회적 책임 이행과 관련되어 보다 구체적인 강제조정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원의 태도는 일본의 마이니치 신문등에 1면으로 대서특필되어 그 동안 일제 피해자에 대해 정의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한일간에 우리 법원의 판단이 새로운 희망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2004.2.13.서울

행정법원이 한일회담문서공개에 대해 원고 승소판결을 함으로써 한국에서 한일회담문서를 공개시킴과 아울러 이것에 용기를 받은 일본의 시민들이 일본내 재판을 통해 일본에서도 한일회담문서를 공개하여 시켜가고 있고 그 과정에서 독도가 일본의 부속도서가 아니하는 일본의 법령까지 발견하게 하여 우리 법원의 판결이 한일간에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정착시키는데 기여하고 있는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는 아리랑 3호의 발사용역업체로 선정된 이상 더욱 솔선수범하여 일제 침략전쟁이 남긴 상처를 치유하는데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4.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한국 법정에서 피해자들과 일체의 대화를 거부하고 시종 오만한 태도를 시정하고 있지 않는 바, 이는 극히 유감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앞서 제출한 준비서면등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일본 법원에서 피해자들의 오랜 투쟁에 의해 얻은 법리적 성과를 취합하는 것 만에 의해서도(특히 나고야고등재판소의 2007년 판결) 법리적으로 원고들이 패소를 할 이유는 없는 상황에 도달하여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 법원의 헌법 규범에 따른 판단마저 부가되면 우리 법원에서만은 반드시 승소판결이 나와야 할 것입니다. 귀 원의 엄정하고 역사적인 판결을 통해 한일간에 법치주의가 제대로 실현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첨 부 서 류

1. 신문기사 2통
1. 요청하신자료송부 1통

공증인가 SAMIL 법무법인 삼 일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33-2 범어빌딩 4층 대표전화. (053) 743-0031 FAX. (053) 753-6963
[redacted]

1. (사)한국원폭피해자협회공문송부 1통

1. 우선협상대상자지정에대한건 1통

1. 성명서 2통

2009. 1.

위 원고들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 일

담당변호사 최 봉 태

부산고등법원 귀중

공증인가 SAMIL 법무법인 삼 일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33-2 범어빌딩 4층 대표전화. (053) 743-0031 FAX. (053) 753-6963